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71호(號) 1931(昭和 6)년 7월 3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8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9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,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, 私設鐵道, 軌道及航路間旅客竝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 제1조[條]에 의[依]한 연대운송[連帶運送]의 범위[範圍] 및 특종취급사항[特種取扱事項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8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7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 별표(別表)2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(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)의 부문[部] 중(中) 「경부본선(京釜本線: 천안[天安])」을 「경부본선(京釜本線: 천안[天安]) 군산선(群山線: 군산항[群山港]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3조(條) 중(中) 「항로(航路)」를 「사설철도(私設鐵道: 자동차선[自動車線]을 제[除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